

[붙임]

신구조문 대비표
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<p>제 38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</p> <p>-신 설 -</p> <p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안건과 함께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-신 설 -</p>	<p>제 38 조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</p> <p>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.</p> <p>①-1 이사회는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신설 2026.05.13></p> <p>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안건과 함께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③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며,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④이사회는 『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지배구조법” 제 30 조의 4 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.</p> <p><신설 2026.05.13></p>	
	<p>부 칙 (2026.05.13)</p> <p>제 1 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6 년 5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 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정비)</p>	